

급여규정

GENERAL MANAGEMENT SYSTEM PROCEDURE

문서번호	IMS-1051-00
개정차수	7
제/개정일자	2019.07.01
문서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리본 <input type="checkbox"/> 비관리본
관리번호	n/a (표준기안용)

(주)인터비즈시스템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61, 16층(등촌동, 더스카이벨리5차)

Tel 02-786-0071 / Fax 02-786-0075

<http://www.inter-biz.co.kr>

0 제/개정 이력

일자	개정차수	내용
2000년 07월 30일	0	신규제정
2001년 02월 28일	1	상호변경으로 인한 개정
2001년 04월 23일	2	상호변경 및 로고변경으로 인한 개정
2001년 11월 01일	3	급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
2008년 01월 01일	4	회사 조직 개편으로 인한 개정
2009년 01월 01일	5	회사 조직 및 CI 변경으로 인한 개정
2010년 07월 01일	6	전면 개정
2019년 07월 01일	7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공 백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인터비즈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 “인사관리규정(IMS-1041-00)”에 따라 채용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IMS-1021-00)”에서 정한 직원의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임금의 구성항목

- a)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기본급 외의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으로 구성한다.
- b) 수당은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영업수당, 기술수당, 조정수당 등이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c)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d) a)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기본급

기본급은 직원의 근무성적, 직무, 직급 등에 따라 결정한다.

5. 제 법정수당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반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예상되는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계에 의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기타수당

업무수행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a) 직책수당: 특별한 직책에 임명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직책수당은 반장수당, 조장수당, 팀장수당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b) 영업수당: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직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c) 기술수당: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d) 조정수당: 직종간 또는 입사 초기의 임금여건 등 특이한 사항하의 불합리 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급여 계산기간

개별 근로계약 또는 별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급여 계산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으로 할 수 있다.

8. 급여 지급일

개별 근로계약 또는 별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10일, 15일, 25일 중 근무환경 등에 따라 결정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급여의 계산 및 지급

9.1 급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 a) 급여는 채용, 퇴직, 휴직, 복직, 승진, 감봉, 급여인상 등 급여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
- b) 일할은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9.2 휴직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휴직을 명령 받거나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수혜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3 직위해제

직위해제중인 직원은 해당되는 기간 동안 급여의 20%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9.4 수습직원

수습중인 직원은 해당되는 기간 동안 급여의 30%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9.5 겸직

직원이 회사의 명령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6 촉탁

촉탁으로 임명된 자의 급여는 촉탁된 자와의 개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9.7 소급지급의 제한

- a) 급여인상 및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상 및 조정된 급여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한다.
- b) 소급적용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중도 퇴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지급방법

개별 근로계약 또는 별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급여는 통화로써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인수령이 불가능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지급할 수 있다.

10. 상여금

10.1 상여금의 지급조건

회사는 경영성과와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기준일을 결정한다.

10.2 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3 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a) 분기별 또는 월할 지급할 수 있으며 당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b) 지급액은 직종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c) 수습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0.4 직위해제자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직위해제중인 자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0.5 촉탁의 상여금

촉탁으로 임명된 자의 상여금은 상근자에게만 지급하고 비상근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5 비정상 근무자의 상여금

- d) 1월 이상의 휴직, 병가를 포함한 휴가중인 직원은 상여금 지급일수 중 해당기간을 제한 일수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e) 지급기준일 해당 연도에 채용된 직원은 다음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a) 입사 3개월 미만: 정상지급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b) 입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정상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c) 입사 6개월 이상: 정상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

10.6 일반 사항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하여진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11. 퇴직금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한다.

11.1 퇴직금의 계산

- a)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월 분을 3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 b) a)항의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하며 상여금은 퇴직 전 지급받은 1년 분을 12등분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한다.
- c)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d)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1.2 근속기간

- a)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발령일까지 하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11.3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퇴직 및 퇴직금 지급연장 동의서(IBF-1051-00-01)”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최종 급여 이후 영업일 10일 이내 지급한다.

11.4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 감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1.5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 a) 취업규정 (IMS-1021-00)
- b) 인사관리규정 (IMS-1041-00)

13.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보관기간	보존년한	비고
IBF-1051-00-01	퇴직 및 퇴직금 지급연장 동의서	5년	영구	